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19
----------	-----

제출연월일 : 2009. 8. 17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덕망있고 경륜있는 다양한 인적자원 발굴을 위하여 정무부시장의 근무상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무부시장 임용시 근무상한연령 초과자도 임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무부시장
2.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의회회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u>다만,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생략)</p>	<p>제6조(근무상한연령) ①----- ----- ----- <u>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정무부시장</u></p> <p>2. <u>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u></p> <p>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0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②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